

2022. 11. 3.

수신 : 동구의회 의장




제목 : 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끝.

발의자 : 허근형 의원 (안도훈 서명)

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
동의자 서명 용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이상욱		
안종원	안종원	
김재현		
이희자	이희자	
김희재		
김미연		

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3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3.

발의자 : 동구의회
허근형 의원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동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라. 자립 지원 및 예산의 지원(안 제5조~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22. 11. 10.~2022. 11. 15.(5일 이상, 의견 없음)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호대상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호종료아동”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부산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립 지원)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
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
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4. 신체적·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
5. 그 밖에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예산의 지원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